

제 1504 호  
1990. 7. 25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공보관 유 천수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2637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	3
◎ 훈 령		
제 705 호	서울특별시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개정규정	3
제 706 호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교통정보실운영규정	3
제 707 호	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	6
제 708 호	서울특별시종합청사건립협의회규정개정규정	18
제 709 호	서울특별시시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개정규정	18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689

● 고 시	
제 24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고시	18
● 공 고	
제 435 호 다동구역제11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9
● 구 고 시	
제 1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중구)	20
제 2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송파)	21
● 구 공 고	
제 48 호 판인신조공고 (강남)	21
제 58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 (강동)	22
제 62 호 정경공고 (구로)	23
제 83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 (송파)	23
● 시 교육위원회고시	
제 26 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24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7. 23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37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에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공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7. 23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훈령제705호

서울특별시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개정규정

서울특별시 버스노선 조정심의회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관리국장"을 "도로국장"으로하고 "지하철본부장"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운수1계장"을 "시내버스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교통정보실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7. 23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훈령제706호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교통정보실운영규정

제1조(목적) 교통정보의 신속, 정확한 수집과 전파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계반급급수배사항을 방송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설치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정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제2조(기능) 정보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모든 교통정보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분석
3. 교통정보의 전파
4. 교통통신원의 조직관리
5. 교통방송본부와 경찰과의 업무협조

제3조(구성) 정보실에 실장 및 차장외에 직원 9명을 두되 서울특별시 경찰국소속 경찰관중에서 파견 근무하게 한다.

제4조(통신) ①정보실에는 서울특별시 경

<p>차량 교통관제실 및 치안본부 고속순찰대, 인천시경찰국, 경기도 경찰국의 교통무전 망을 구성 운영한다.</p> <p>②고속도로 순찰대, 서울시경찰국, 인천시 경찰국, 경기도 경찰국과는 직통경비 전 화망을 구성 운영한다</p> <p>③교통정보 통신원의 신고접수 및 업무처 리를 위하여 일반전화 및 구내전화를 설 치 운영한다.</p> <p>④통신용어는 경찰용어를 사용하여야 한 다.</p> <p>제5조(임무) ①정보실장은 정보실 운영을 총괄하고 정보실 요원의 근무등을 지휘감독한다.</p> <p>②차장은 정보실장을 보좌하며, 정보실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p> <p>③정보실 직원은 갑, 을, 병반으로 구분 매일 3부제로 실시하되, 각반 선임자는 반장으로 각종 신고접수, 처리, 전달, 수 합, 통보등 업무를 수행한다.</p> <p>④보조통신원은 통신원 및 일반 시민으로부터 신고되는 정보를 정보실 요원에 전달한다.</p> <p>제6조(통신원 조직 및 관리) ①교통방송 통신원은 다음각호와 같이 구분 선발 조직 운영한다.</p> <p>1. 경찰통신원은 교통경찰과 교통싸이카 및 순찰차, 교통관리대, 고속순찰차, 방 범순찰차등의 승무원 및 지.파출소 요원을 당연직으로 하되, 각 기능별로 핵심 요원을 별도 선발 운영한다.</p> <p>2. 보조통신원은 각 경찰서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선발된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회 회원, 기타 새마을 교통봉사대, 친철 봉사대 및 보조통신원으로 자원하는 지도급 인사로 한다.</p>	<p>②보조통신원의 선발은 경찰서 또는 조직 단체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접수 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 확정한다.</p> <p>③확정된 보조통신원은 지역별(중부, 동부, 서부, 북부, 남부, 직할대)로 지역책임자와 총무를 두어 근무 및 업무인력을 수행토록 한다.</p> <p>④보조통신원의 교육 및 근무지정은 정보실장이 편성국과 협의 결정하고 본부장에게 보고 후, 지역별 책임자와 총무에게 통보 시행한다.</p> <p>제7조(통신원의 근무) ①경찰통신원을 제외한 보조통신원은 교통관리 및 방송상 필요한 경우 특정지역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근무를 명할 때에는 최소한 근무일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②도범운전 통신원 및 봉사단체 통신원은 매일 8명씩 순번제로 하여 오전(07:00-10:00) 오후(17:00-20:00)에 각 3명씩 정보실의 보조근무를 한다.</p> <p>③정보실 및 특정지역 근무를 명받아 보조통신원이 특별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때는 소속지역 총무에 보고 근무교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총무는 근무교체 사실을 정보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통신원의 임무) ①경찰통신원은 업무상 얻은 모든 교통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보조통신원은 운행중 얻은 모든 정보를 즉시 정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정보실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특정지점 및 도로의 정체사항</p> <p>2. 교통규제의 신설 및 변경</p>
---	--

<p>3. 공사 및 행사등으로 인한 교통처리 변경 및 통제</p> <p>4. 교통사고 및 화재, 다중범죄등으로 소용에 장애요인 발생상황</p> <p>5. 차량도난, 사고도주, 택시강도등 긴급수배를 필요로 하는 사항</p> <p>6. 교통경찰관 및 통신요원의 선행</p> <p>7. 교통단속 계획 및 홍보사항</p> <p>8. 지역적 이상기후 발생사항</p> <p>9. 유실품의 신고, 접수</p> <p>10. 기타 교통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p> <p>제9조(접수정보의 확인) ①정보실장은 일반시민의 제보중 신빙성이 의심되는 제보를 접수하였을시는 반드시 인접 교통경찰 통신원에 명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p> <p>②확인 결과 사실임이 판명 되었을시에 한하여 방송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방송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제10조(긴급 수배) ①정보실장은 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긴급수배 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편성국과 협조 즉시 방송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져 차량의 번호등이 확인되었을 때</li> <li>2.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하고 도주한다는 신고가 있을 때</li> <li>3. 택시강도, 차량도난, 기타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을 때</li> <li>4. 기타 긴급 수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li> </ol> <p>②긴급 수배사항이 해제 되었을 시는 즉</p>	<p>시 해제 사실을 방송하여야 한다.</p> <p>제11조(방송) ①정보실에서는 편성 내용에 따라 직접 방송에 참여 방송할 수 있다.</p> <p>②정보실에서는 교통프로그램 제작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p> <p>제12조(보고, 통보) ①정보실장은 제보사항의 접수와 수합, 분석 및 방송사항은 별지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본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정보실에 접수된 내용이나 방송된 내용 중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3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3조(근무교대) ①정보실장 및 차장은 매일 07:06~23:00까지 방송시간을 감안 적의 교대근무를 한다.</p> <p>②정보실 근무 경찰관의 근무시간은 매일 09:30 익일 09:30까지로 하되, 3부제(일근, 야근, 비번)로 구분 교대근무 한다.</p> <p>제14조(유공자포상) ①정보실장은 교통통신원의 개인별 정보제공 실적을 매월말 기준 수합 기록관리하고, 연말에는 1년간 실적을 수합하여 우수자중 표창및 특진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할 수 있다.</p> <p>②포상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우수자 3명 이내 : 특진</li> <li>2. 우수자 30명 이내 : 표창</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일기		요일	
감			무			부			자
부			부			부			부
계	급	성	명	인	계	급	성	명	인
근 무 사 항									
시	간	근 무 내 용				근 무 자	재 보 자	비 고	
<p>* 근무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하고 비고란에는 방송여부 기록</p>									
<p>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7. 23</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고 건 ⑩</p> <p><b>◎서울특별시훈령제707호</b></p> <p><b>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b></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분야별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p>					<p>운용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정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p>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재정부담 기준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정한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p> <p>제3조(재정부담의 종류와 기준) ①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업무분야별 경비의 기준(이하 "재정부담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이 한다.</p> <p>②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의 재정행관상 또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도 추가 부담을 하거나 또는 추가 부담하게 할 수</p>				

<p>있다.</p> <p>제4조(재정부담에 따른 재원의 종류) ①시 장과 자치구청장이 소관사무 수행에 필요 한 경비를 시비 및 구비로 구분 부담함에 있어서는 각각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재원 을 사용할 수 있다.</p> <p>1. 서울특별시비</p> <p>가.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원</p> <p>나. 기 금</p> <p>다. 자치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및 재정</p>	<p>보조금</p> <p>라. 기 타</p> <p>2. 자치구비</p> <p>가.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원</p> <p>나. 기 금</p> <p>다. 기 타</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별표1]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기준 (제3조 관련)

소 관	사 무 분 야	경 비 부 담 구 분	
		서울특별시비	자치구비
내 무 국	1. 인건비	○시산하 공무원의 급여 및 관련경비	○자치구산하 공무원의 갈 여 및 관련 경비
	2. 영선사업	○시영선사업	○구역선사업
	가. 구청사 건립	○구역선사업 일부 - 신규건립: 부지매입 및 건축비의 50% - 중·개축: 소요액의 50%	- 신규건립: 부지매입 및 건축비의 50% - 중·개축: 소요액의 50% - 청사유지관리 경비
	나. 구민회관	- 부지매입, 신축비 50% - 중·개축 50%	- 부지매입, 신축비의 50% - 중·개축 50% - 유지관리 경비
	다. 구의회 의사당	- 신 축  · 건축비 50% - 중·개축 50% - 임 차 50%	- 신 축  · 부지확보 100% · 건축비 50% - 중·개축 50% - 임 차 50%
라. 동청사 건립 및 중·개축	- 신설에 따른 신규 동청 사 건립비 50%	- 신설에 따른 신규동청 사 건립비 50% - 확장, 이전에 따른 신축 및 중·개축비 전액	

소 관	사 무 분 야	경 비 부 담 구 분	
		서울특별시비	자치구비
내 무 국           재 무 국           시민생활국	3. 통반장 운영, 지원 적려	-	통반장 수당지급 및 격려 경비 전액
	4. 공적선거	○시의원 선거 경비	○구의원 선거경비
	5.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	○호적 및 주민등록 총괄 관리	○호적 및 주민등록 발급 관리
	6. 새마을소득사업	-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
	7. 새마을 시설물 운 영	○새마을시설물 운영관리 지도	○새마을시설물 운영관리
	8. 각종사회 단체지 원	○시단위 조직에 대해 사 업단위로 예산지침 범위 내 지원	○구단위 조직에 대해 사 업단위로 예산지침 범위 내 지원
	9. 지방세와 지방세 의수입의 부과징 수	○시세와 시세의 수입의 부과징수	○구세와 구세의 수입의 부과징수 ○토지동량의 설정 및 수정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 책정 및 시가조사
	10.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의 감사 와 재산관리	○시예산 편성,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구예산 편성, 집행 및 회 계감사와 재산관리
	11.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시행정장비 관리 및 행 정관리 개선 ○행정전산화 업무총괄 조 정 및 시행	○구행정장비 관리 및 행 정관리 개선 ○행정전산화 추진
	12. 공유재산 관리	○시유재산관리	○국유, 구유재산관리
	13. 쓰레기 청소	○광역단위 일반폐기물 중 발처리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쓰레기매립장 및 시설 -쓰레기처리장비 확보 및 운영 (중계처리장-해안매립 장) -분뇨처리장 -쓰레기중계처리장	○구단위 일반폐기물의 처 리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쓰레기 수거 인력 장비 유기관리 (청소원, 차량, 기타장 비)



소분	사무분야	경비부담구분	
		서울특별시비	자치구비
보건사회국	14. 주민복지 일반에 관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유지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폐기물 중간,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유지관리</li> <li>-쓰레기적환장</li> <li>-쓰레기 중간집하장</li> <li>-기타 중간, 간이처리 시설</li> <li>○소규모 공동이용 위생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li> <li>-공중변소 설치 및 유지관리</li> <li>-이동식 화장실</li> <li>-기타 공중용 위생시설</li> </ul>
	15.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복지증진 및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li> <li>○전체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 조정, 지도 및 조인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민복지 증진 및 구민보건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li> <li>○구단위 지역주민 이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li> <li>○구민복지 상담</li> <li>○기타 환경위생 증진등 구민보건향상을 위한 일반 시책사업 추진</li> <li>○사회복지시설 관련업무에 대한 시사무의 위안사항 처리</li> </ul>

소 관	사 무 분 야	경 비 부 담 구 분	
		서울특별시비	자치구비
보건사회국	16. 생활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보호 일정액 지원</li> <li>- 자활보호 (긴급구호) : 시비100%</li> <li>- 거택보호 : 국비 50%, 시비 25%</li> <li>- 시설보호 : 국비 50%, 시비 50%</li> <li>- 의료보호 : 국비 50%, 시비 50%</li> <li>- 직업훈련 : 국비 100%</li> <li>- 취로사업실시(총소요의 50%)</li> <li>- 교육보호(학자금보조)</li> <li>· 거택보호자녀 : 국비50%, 시비25%</li> <li>· 시설보호자녀 : 국비50%, 시비50%</li> <li>· 자활보호자 자녀 : 국비50%, 시비50%</li> <li>· 의료부조자 자녀 : 국비50%, 시비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보호의 실시</li> <li>- 자활보호 (긴급구호) : -</li> <li>- 거택보호 : 구비 25%</li> <li>- 시설보호 : -</li> <li>- 의료보호 : 시위임 집행 업무</li> <li>- 직업훈련 위임사항</li> <li>- 생업자금 지원</li> <li>- 취로사업실시(총소요의 50%)</li> <li>- 교육보호(학자금지원)</li> <li>· 거택보호자녀 : 구비 25%</li> </ul>
	17. 의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보호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집행</li> <li>- 의료보호대상자 거점 및 관리</li> <li>- 보호비용의 징수 및 지급(지방비부담액 전액)</li> <li>- 기타 의료보호실시 업무</li> </ul>
	18. 장애인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li> <li>○ 심신장애자의 집진, 재활 상담 및 시설애의 입소</li> <li>○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장애자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중 시위임 사무</li> </ul>

소 관	사 무 분 야	경 비 부 담 구 분	
		서울특별시비	자치구비
보건사회국	19. 전염병예방 및 기타질병의 예방	설치·운영·지원 ○전염병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의 수립 및 대주민 홍보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전염병진료를 위한 대응 기관의 지정 및 그 기관 소요 경비 보조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약물중독자의 강제수용 과 치료 ○질핵진료소 및 요양소의 설치 운영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전염병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 제도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전염병예방 대응시설 거 정운영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 득의 실시 ○기생충 예방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 역
	20.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자치구 보건소(지소)업무의 지도 감독	○보건소(지소)의 설치운영 -시설물건립(국비50%, 자치구비50%) -보건소(지소)장비의 설치 및 보강(국비50%, 자치구비50%) -보건소(지소)의 유지운영
가정복지국	21.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 및 복지증진 가. 노인복지	○노인복지사업계획의 수립·조정 ○경로사업의 실시 -경노우대 사업시행 -재가노인 봉사활동	○구단위 노인복지사업 계획 수립 ○경로사업의 실시 -노인건강 진단 -노인봉사대 운영·지원

소 관	사 무 분 야	경 비 부 담 구 분	
		서울특별시비	자치구비
가정복지국	<p>나. 아동복지 사업</p> <p>다. 청소년 복지</p>	<p>-노인상담소 운영 및 노인능력개발, 직종보급</p> <p>○양로원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p> <p>○아동상담소 설치, 운영</p> <p>○아동복지위원회의 운영</p> <p>○시단위 아동전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p> <p>-아동회관</p> <p>-아동전용 체육, 연주, 영화, 과학전람시설 등</p> <p>○아동보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p> <p>○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p> <p>○시단위 청소년 복지시설의 설치운영</p> <p>-청소년 회관</p> <p>-청소년 종합복지관</p> <p>-근로청소년 임대APT</p> <p>-청소년 광장</p> <p>-열람석 200석 초과 청소년 독서실 설치</p> <p>-기타 시단위 청소년 이용, 수용 복지시설</p> <p>○불우청소년 보호지원</p> <p>-소년소녀 가장생태 지원</p>	<p>-경로당, 노인경, 노인교실 기타 구단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p> <p>-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 취, 오락사업 등</p> <p>-경로주간 설정, 운영</p> <p>○양로원등 노인복지시설 업무에 대한 시 위원 사무집행</p> <p>○아동위원회의 설치 운영</p> <p>○구단위 아동전용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p> <p>-아동회관</p> <p>-아동전용 체육, 연주, 영화, 과학전람시설 등</p> <p>○아동보호, 복지시설 관련 시. 위임사무</p> <p>○구단위 청소년 복지시설의 설치운영</p> <p>-공부방(열람석 50석 이하) 설치, 운영</p> <p>-독서실 설치 운영 (열람석 200석이하)</p> <p>-기타 구단위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운영</p> <p>○불우청소년 보호지원</p> <p>-소년소녀 가장생태 파</p>

소 관	사 무 분 야	경 비 부 담 구 분	
		서울특별시비	자치구비
가정복지국	라. 모자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우청소년 수용·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li> <li>○모자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자보호시설</li> <li>-모자자립시설</li> <li>-리혼모시설</li> <li>-일시보호시설</li> <li>-부녀복지관 및 상담소</li> </ul> </li> <li>○요보호 모자세대에 대한 보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비 지원</li> <li>-아동교육비 지원</li> <li>-아동양육비 지원</li> <li>-직업훈련 및 기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악, 관리</li> <li>-불우청소년 수용·이용 시설에 대한 위임 사무 처리</li> <li>○모자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위임 사무 집행</li> <li>○요보호 모자세대의 파악 관리</li> </ul>
	마. 부녀아동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단위 부녀아동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li> <li>-부녀복지관</li> <li>-부녀상담실</li> <li>-기타 광역 부녀, 아동복지시설</li> <li>○윤락여성선도 및 직업</li> <li>○윤락여성 지도소 및 직업보도시설의 설치</li> <li>○공설요거,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 남골당의 설치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단위 부녀 아동복지 시설 설치, 운영지원</li> <li>-부녀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li> <li>-탁아원</li> <li>-유아원</li> <li>-기타 구단위 부녀, 아동복지시설</li> <li>○윤락여성 실태조사, 관리</li> <li>○윤락여성 지도 및 직업보도관련 시위임 사무 처리</li> </ul>
	22. 요거화장장 및 남골당의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설요거,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 남골당의 설치 운영</li> </ul>	

소 관	사 무 분 야	경 비 부 담 구 분	
		서울특별시비	자치구비
가정복지국 산업경제국	23.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계몽교육</li> <li>○ 소비자 보호전담 기구 설치운영 및 민간소비자 보호단체의 육성</li> <li>○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험·검사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li> <li>○ 종합구판장 설치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분묘의 정리</li> <li>○ 무연유골 처리</li> <li>○ 물가저도 단속</li> </ul>
	24. 중소기업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li> <li>○ 중소기업 이전 실시 계획의 작성</li> <li>○ 중소기업 육성보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고발센터 등 소비자 보호전담기구의 운영관리</li> <li>○ 구판장 운영관리</li> <li>○ 당해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li> </ul>
	25.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사의 설립·운영</li> <li>○ 지방공단의 설립·운영</li> <li>○ 지방공기업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li> </ul>	
	26. 농림, 축,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수산기반 조성사업 지원</li> <li>○ 농산물 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조정</li> <li>○ 농산물 집하장 설치운영</li> <li>○ 가축시장 개설운영</li> <li>○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li> <li>○ 농업생산물 및 시설자재의 재해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시행</li> <li>○ 농산물 병충해 방제지도</li> </ul>
	27. 축산개발 및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종축의 지정</li> <li>○ 가축개량, 증식보호</li> </ul>	
	28. 가축전염병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단체지도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점검, 투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환경연구원 및 시험</li> </ul>	

소 관	사 무 분 야	경 비 부 담 구 분	
		서울특별시비	자치구비
주 택 국	29. 도시재개발	소 운영 ○도축장 운영 및 관리 ○도시재개발 및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시 위임사무 집행
	30.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을 위한 시위임 집행사무
	31. 도시환경 개선	○광고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광고물 관리 -설치허가 및 신고 -불법광고물 단속경비
도 로 국	32. 도로의 설치, 유지관리	○노폭20m 이상 도로의 개설확장	○노폭20m 미만 도로의 개설확장
		○노폭20m 이상 차도의 유지보수 관리	○노폭20m 미만 차도의 유지보수 관리
		○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 -노폭 20m 이상 도로의 지하보차도 육교	○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 -노폭20m 미만 도로의 지하보차도 육교
		-노폭 20m 이상 도로의 가로등 설치 개량	-노폭20m 미만 도로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개량
		○기타 도로시설물 설치관리 -한강 상 교량 -B=20m 이상 일반교량	○기타 도로시설물 설치관리 -B=20m 미만 도로의 일반교량
		-차도육교 및 고가차도 -입체교차시설	-일반터널의 유지관리
		○노폭 20m 이상 도로변의 재해예방 및 정비사업	○노폭20m 미만 도로변의 재해예방 및 정비사업
		○노폭 20m 이상 도로의 재설각업	○노폭20m 미만 도로의 재설각업
		○노폭 20m 이상 도로의 굴착복구 및 굴착복구 기금운영	○도로의 굴착승인 및 20m 미만 도로의 복구와 굴착복구 기금 운영
		○노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한 미분보상	○노폭20m 미만 도로에 대한 미분보상
하 수 국	33. 치 수	○유포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	○전체 보도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적합하천, 지방하천, 준	○구거의 복개 정비 유지

소 관	사 무 분 야	경 비 부 담 구 분		
		서울특별시비	자치구비	
하 수 국	34. 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 하천의 복개경미 유지관리</li> <li>○ 직할·지방·준용하천 부속물의 관리</li> <li>○ 직할·준용·지방하천 편입토지의 미분보상</li> <li>○ 우수배제펌프장 건설 보강</li> <li>○ 전농, 장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li> <li>○ 대단위, 광역 공공하수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처리장, 차집하수관 지설치, 유지관리</li> <li>- 간선하수도(D=900%이상)설치, 개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li> <li>○ 구거외 부속물 관리</li> <li>○ 구거편입토지의 미분보상</li> <li>○ 우수배제펌프장 유지관리</li> <li>○ 수문의 설치 및 유지관리</li> <li>○ 지역공공하수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선하수도(D=900%미만)설치, 개탕</li> </ul> </li> </ul>	
		35. 재 해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장이 행할 응급조치 외 대행</li> <li>○ 재해시설의 설치</li> <li>○ 재해구호</li> <li>○ 해빙기 안전대책 수립</li> <li>○ 재해구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방단의 조직·운영</li> <li>○ 방재훈련의 실시</li> <li>○ 재해응급대책의 수립시행</li> <li>○ 지해시설의 설치</li> <li>○ 재해구호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li> </ul>
		36. 임 야, 녹 지 산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림 보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기념물</li> </ul> </li> <li>○ 야생동물 보호계획 수립 지도</li> <li>○ 사방사업 및 절개지 미화단장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면적 3,000㎡ 초과 사업비 전액</li> </ul> </li> <li>○ 가로수 녹지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종로, 시청앞, 서울역, 남대문, 대학로의 녹지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보호수·보존관리</li> </ul> </li> <li>○ 야생동물 보호추진</li> <li>○ 사방사업 및 절개지 미화단장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면적 3,000㎡이하 사업비 전액</li> </ul> </li> <li>○ 가로수, 녹지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원가로수 녹지대관리</li> </ul> </li> </ul>
환경 녹 지	37. 공 원 녹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묘생산 및 보급</li> <li>○ 공원의 설치(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묘식재·관리</li> <li>○ 공원의 설치(조성)</li> </ul>	



소 관	사 무 분 야	경 비 부 담 구 분	
		서울특별시비	자 치 구 비
환경녹지	38. 환경 분야	-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유원지의 조성 - 면적 30,000㎡초과의 근린공원 조성	- 면적 30,000㎡이하의 근린공원조성 - 어린이 공원의 조성  ○공원의 유지관리 -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유원지의 유지관리  ○공해에 관한 지도 및 단속
		○산업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운영 ○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자동차, 공해)의 방지대책	
문화관광국	39. 천연기념물 보호	○천연기념물의 보호 유지관리	
	40. 유형문화재	○국가 및 시지경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	○향토사적 보수 및 유지관리
	41. 무형문화재 보호 42. 지방문화 예술 활성화	○무형문화재 보호·관리 ○시단위 지방문화사업	○구단위 지방문화사업
교통국	43. 주차장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 ○시단위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 ○시단위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44. 교통안전 시설	○교통신호기, 안전표지판, 차선 및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관리	○도로안내 표지판의 설치, 유지, 관리
	45. 불법주차 단속	○불법주차 단속계획 수립 및 실시	
민방위	46. 민방위 시설	○민방위교육 기본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100% ○기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설치 및 운영비 50%	○기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설치 및 운영비 50%

서울특별시종합청사건립협의회규정중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7. 23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훈령제708호

서울특별시종합청사건립협의회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종합청사건립협의회규정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심의사항"을 "자문사항"으로  
하고 본문중 "심의한다"를 "자문한다"로  
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  
획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내무국장 재무국장, 도시계획국  
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시정연구원, 종합  
건설본부차장 및 시정자문위원인 일반인  
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제6조 제1항중 "주택건설사업소 공사1과장"  
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의 개최에 따른 소집, 연락에 관  
한 사항
2. 회의서류의 작성, 배부에 관한 사항
3. 회의내용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등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7. 23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훈령제709호

서울특별시시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시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식1) (서식2)중 본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24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공고 제387호 ('90. 6. 29)로  
공람공고 한바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업(도로)의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였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와 양천구청(건설관리과)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1990. 7. 2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양천구 신정동 162-  
19일대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li> <li>○ 명칭: 신정2교 입체교차로 시설공사</li> </ul> <p>다. 사업의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폭 25m - 35.1m, 연장 560m</li> </ul> <p>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p>	<p>인가일-'90. 8. 5</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 별첨</p> <p>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p>
--	---

토 지 조 서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신정동 162-24	잡	192㎡	종로구 관철동 45-1	한국가스 안전공사		
신정동 162-25	잡	153㎡	동작구 내방동 392-25 마포구 성산동 249번지	최장하 박형연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435호

다동구역제11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위 한 공 람 공 고

1. 건설부 고시 제367호('73. 9. 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46호('76. 4. 7)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42호('90. 7. 23)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다동구역 제11지구에 대하여 지구내 토지소유자인 (주)금성빌 대표 한중언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시 주택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토지등의 소

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것이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 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0. 7. 24  
서울특별시

- 1) 재개발사업의 명칭: 다동구역 제11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중구 다동 64번지의 21필지
- 3) 시행면적: 3,238㎡
- 4) 시행자: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주)금성빌 대표 한중언
- 5)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 6) 시행기간: '90. 8 - '94. 8. 31
- 7)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서 및 규약
- 8) 공람기간: '90. 7. 24 - '90. 8. 23
- 9) 공람장소: 서울시 주택국 재개발과

**구 고 시**

●중구고시제1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05호('83. 2. 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123호('83. 3. 3)로 지적승인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4호('90. 4. 10)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12호('90. 5. 8)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토 지 조 서 (추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수용면적)	소유자 및 관계인주소, 성명		비 고
				주 소	성 명	
289-74	대		20	도봉구 수유동 57-32	권 연 신	
289-92	"		53	중구 신당동 289-74	김 현 불	
290-203	"		44	중구 신당동 290-178	한 범 석	
290-201	"		85	중구 신당동 290-173	손영수의 7인	

○ 건 물 조 서 (변경)

소재지지번	구 조	용도	수 용 면적(㎡)	소유자 및 관계인주소, 성명		비 고
				주 소	성 명	
당초290-101 변경290-201	목 조 스테 트	주거	47	신당동290-201	전성현	
당초290-101 변경290-201	"	"	10	신당동290-201	"	
당초45-207 변경45-207	철근콘크리트스라브	"	당초56(1층) 변경56(1층) 56(2층)	신당동45-99	이병팔	

1990. 7.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신당동 290-178~신당동 45-206간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명칭 : 신당6동 290-289번지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다. 당초사업의 규모 : 폭 8m, 연장 135m

변경사업의 규모 : 폭 8m, 연장 145m

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마. 당초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

변경사업 착수일 : 1990년 5월 인가일로부터

준공 예정일 : 1992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세목조서 : 별항(토지, 건물 변동없는 물건은 생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항

●송파구고시제2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7.

송 파 구 청 장  
- 다 음 -

1. 사업 명 : 가락동 법원 직장주택조합의 3개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법원 직장주택조합의 3개조합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161번지 1호  
나. 내지 면적 : 5,411㎡

2. 승인인영

다. 건축면적 : 9,129.88㎡

라. 규 모 : 아파트 15층 1동 85세대

4. 사업시행기간 : 1990. 8 - 1991. 12

구 공 고

●강남구공고제48호













관 인 신 조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인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된 관인을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0. 7. 18

강 남 구 청 장

1. 관인 사용 개시일 : 1990년 8월 1일 09 : 00

인 영				
공인명	신사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논현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학 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압구정 제1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인 영				
공인명	압구정 제2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청담 제1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청담 제2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삼성 제1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인 영				
공인명	삼성 제2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대치 제1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대치 제2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대치 제3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인 영				
공인명	대치 제4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역삼 제1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역삼 제2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도곡 제1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인 영				
공인명	도곡 제2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개포 제1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개포 제2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개포 제3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인 영				
공인명	개포 제4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세곡 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일원 동장의 인 (민원사무 전용)	일원 동장의 인 (관소 민원사무 전용)
<p>◎강동구공고제58호</p> <p>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p> <p>서울특별시 강동구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 개발 특별 회계 징수관 및 수입금 출납</p>		<p>원의 직인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규칙 제11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p> <p>1990. 7.</p> <p>강 동 구 청 장 ㉔</p>		
<p>직 인 등 록 으 서</p> <p>회 계 명 : 특별회계</p> <p>관 서 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p> <p>직 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징수관</p> <p>사용개시일 : 1990.</p>				<p>인 영</p> 

직 인 등 록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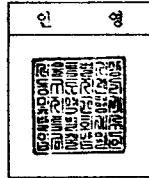
회 계 명 : 특별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 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수입금 출납원

사용개시일 : 1990.



◎구로구공고제62호

정 정 공 고

1. 구로구 공고 제57호 ('90. 7. 11)로 도시  
계획 공람광고한 사항중 일단의 주택지 조

성사업 지구내 도시계획시설(도로)계획안  
에 대하여 시, 중점 일부틀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

1990. 7.

구 로 구 청 장 ㉞

1) 정정공고 사항

구분	등급	류별	폭원 (m)	연장 (m)	정 정 전		정 정 후	
					시 점	중 점	시 점	중 점
기점	중로	1	20	431	강동 152	강동 161-3	강동 252	강동 161-3
기점	소로	2	8	231	강동 168-1	강동 161-5	강동 168-1	강동 161-5
기점	소로	2	8	461	강동 173-3	강동 107-2	강동 173-2	강동 107-2
기점	소로	3	6	77	강동 163-9	강동 163-8	강동 163-9	강동 163-8
기점	소로	3	6	27	강동 173-2	강동 107-2	강동 산18-7	강동 90-1
기점	소로	3	6	40	강동 90-1	강동 164-1	강동 90-1	강동 164-1
기점	소로	3	6	39	강동 91-2	강동 173	강동 91-2	강동 173-3
기점	소로	3	6	176	강동 163-1	강동 252	강동 169-1	강동 157

◎송파구공고제83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지관리 및 지역 균  
형 개발 특별 회계 정수관 및 수입금 출납

원의 직인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공  
무원직인규칙 제7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규  
칙 제11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0. 7. 21

송 파 구 청 장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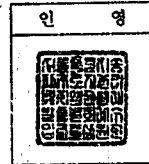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 특별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직 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징수관  
 사용개시일 : 1990. 7월 일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 특별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직 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사용개시일 : 1990. 7월 일



시교육위원회고시

●교육위원회고시제2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9번지 일대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확정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관리의 국 시설과 및 강서교육구청 관리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90. 7. 24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 육 감 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  
 시 송파구 신문로2가 2-77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 육 감
-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신목동중학교 교 사 신축사업
  -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양천 구 목동 909번지 일대
  -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 1) 교 지 면 적 : 10,090㎡
    - 2) 건 축 면 적 : 1,588㎡
    - 3) 전 물 연 면 적 : 7,087㎡
    - 4) 계 원 : 교육비특별회계
    - 5) 사 업 기 간 : 착공년월일 1990. 8. 준공예정일 1993. 12. 30
  -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사신축으로 교 육여건개선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지번, 지 목, 지적, 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 세서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토지조서) : 생략



사 령
-----

◎1990년 7월 20일자 4급공무원 직위해제 령 제297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승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1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내무국 대기근무를 명함. ('90. 7. 20 - '90. 10. 19)	서 초 구	지방시설기정

◎1990년 7월 21일자 5. 6급 기술직공무원 전보 령 제300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병 하	내 부 국	시설계획과	지방토목기과
이 양 수	내 부 국	보건위생과	지방수의사

지방별정직 9급상당공무원 민직

령 제301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두 빈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경찰국면허과	지방별정직 9 급 상 당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사령
-----------

◎1990년 7월 19일자 6급 기술직 공무원 휴직발령 령 제81호

인비 번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부서	현직급
1	황 창 환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휴직을 명함. (기간: '90. 7. 19 - 9. 18)	강남수도 사업소	지방수도 토목기사

◎1990년 7월 21일자 6급 기술직 공무원 인사발령(5급승진 예정자) 령 제83호

인비 번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현 직 급
1	이 상 율	은행수도사업소 공무과장직무대리	은행수도사업소	지방수도 토목기사
2	박 인 석	강남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직무대리	강남수도사업소	"

인비 번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현 직 급
3	최 창 희	생 산 관 리 부 시설 계획 과 장 직 무 대 리	동부수도사업소	지방수도 토목기사
4	홍 선 길	강동수도사업소 누수 방지 과 장 직 무 대 리	강동수도사업소	"
5	이 기 배	강서수도사업소 공 무 과 장 직 무 대 리 누수 방지 과 장 결 직	강서수도사업소	"
6	김 성 정	영등포수도사업소 공 무 과 장 직 무 대 리	영등포수도사업소	"
7	황 선 문	중부수도사업소 공 무 과 장 직 무 대 리	중부수도사업소	"
8	윤 석 우	급 수 부 누수 방지 과 장 직 무 대 리	강동수도사업소	"
9	이 세 진	북부수도사업소	중부수도사업소	"
10	이 제 유	서부수도사업소 공 무 과 장 직 무 대 리	은평수도사업소	"
11	이 기 준	급 수 부 급수장 의 과 장 직 무 대 리	서부수도사업소	"
12	심 진 섭	영등포수도사업소 누수 방지 과 장 직 무 대 리	강동수도사업소	"
13	광 양 현	은평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
14	황 의 석	동부수도사업소 공 무 과 장 직 무 대 리	시설부시설과	"
15	유 기 돈	중부수도사업소 누수 방지 과 장 직 무 대 리	중부수도사업소	"
16	노 창 수	서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

5급 기술직공무원 파견 발령

령 제84호

인비 번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현 직 급
1	심 재 영	강동수도사업소 공 무 과 장 직 무 대 리 (파견기간: '90. 7. 21 - 별도 지시때까지)	급 수 부 누수 방지 과 장	지방수도 토목기사

5급 기술직 공무원 인사발령

령 제85호

인비 번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현 직 급
1	유 제 봉	동부수도사업소공무과장 직위를 면함. 급수부 파견근무를 명함. (하월기급수대책추진요원) (기간: '90. 7. 21 - 별도 지시때까지)	동부수도사업소	지방수도 토목기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